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기 관 의 장
선 람	

제 2030 호 1997. 3. 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제 1997-50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학교)결정및변경결정 3
 - 제 1997-51 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3
 - 제 1997-52 호 '97벼병충해방제계획 3
 - 제 1997-55 호 도시계획시설(수도,녹지)결정및변경결정 4
- 공 고
 - 제 1997-56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4
 - 제 1997-70 호 차량운행제한 5
 - 제 1997-71 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 5
 - 제 1997-72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6
- 구 고 시
 - 제 1997- 8 호 서소문구역제1-2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중구)..... 6
 - 제 1997-1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실시계획변경인가(동대문) 7
 - 제 1997-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실시계획변경인가(동대문) 8
 - 제 1997- 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성북) 9

<이면계속>

공 보									
관									

제 1997-13 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강북)	9
제 1997-1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북)	10
제 1997-15 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강북)	10
제 1997-7 호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도봉)	11
제 1997-7 호	도시계획시설(월곡2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에따른지적승인(노원)	12
제 1997-1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대문)	19
제 1997-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강서)	19
제 1997-2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20
제 1997-2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22
제 1997-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24
제 1997-5 호	주택건설사업제척승인(금천)	26
제 1997-1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작)	26
제 1997-1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작)	27
제 1997-16 호	주택건설사업자동차등록말소(관악)	28
제 1997-12 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서초)	28
제 1997-9 호	민영주택건설투기과열지구지정(송파)	29
제 1997-10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송파)	29

● 구 공 고

제 1997-52 호	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지(성동)	29
제 1995-43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동대문)	30
제 1995-52 호	성북구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역)내의건축동행위허가제한(성북)	30
제 1995-31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양천)	31
제 1995-33 호	도로공사계획(양천)	31
제 1995-18 호	도시계획사업(우뚱업무설비)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따른공람(강서)	32
제 1995-30 호	도시계획안공람(금천)	32
제 1995-53 호	주택건설사업자동차등록말소처분(자진반납)(서초)	33
제 1995-4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3
제 1995-4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4
제 1995-41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송파)	34

● 사업소고시

제 1997-17 호	하천검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34
제 1995-18 호	하천검용승인(한강관리사업소)	35

● 사업소공고

제 1995-16 호	입찰(대공원관리사업소)	35
-------------	--------------	----

● 인 사 발 령

.....	37
-------	----

● 기 타

.....	37
-------	----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97-50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학교)
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학교)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또는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 정	공용의 청 사	-	종로구 수송동 일대 108-4	-	신설	5,506.9	국세청 청 사
변 경	학 교	실업기술학교	구로구 81-1 외 2	3,715	폐지	0	

나. 관련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고시제 1997-51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결 정	공 원	근린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15,179.7	구 전매청창고부지 공원결정

나. 관계도면 : 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97년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하였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1997-52호
'97년 병해충방제계획

1997. 3. 5

서울특별시장

1. 기본방향 : 병해충으로 인하여 쌀생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제 공동방제 실시로 쌀증산에 기여함.
2. 방제 대상 지역 : 시내 일원
3. 방제 계획면적 : 2,736ha(벼재배면적 : 684ha×4회)
4. 방제기간 : 97. 5. 20~97. 10. 20(기간 중 병해충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 선정시행)
5.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가. 병해 :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나. 충해 : 벼물바구미, 벼멸구, 흰등멸구, 이화명나방, 흑명나방
6. 방제요령 : 지역실정에 맞는 방제일시를 결정하고, 모든 가용 인력과 방제 기자재를 총동원하여 일제 공동방제 실시
7. 사업비 지원계획 : 36,870천원(시비 : 12,

210천원, 구비 : 10,660천원, 기타지원 : 14,000천원)

8. 기타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구 지역 설정에 맞도록 계획

◎서울특별시고시제1997-55호

도시계획시설(수도·녹지)결정및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수도,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 법 제1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마포·양천구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수도,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수 도	배수시설	마포구 창전동 산 1-3 일대	8,000	감)8,000	0	와우산 배수지 (터널배수지)
신설	수 도	배수시설	마포구 창전동 3-181 일대	-	증)17,513	17,513	와우산 지하 배수지
신설	수 도	배수시설	마포구 노고산동 산 2-2 일대	-	증)6,280	6,280	노고산 지하 배수지
변경	녹 지	완충녹지	양천구 목동 925-4	1,446.5	증)23.8	1,470.3	

나. 관련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7-56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

1. 상호 : (주)태복산업
 2. 대표자 : 김성수
 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7

4. 변경 내역

신 고 인			변 경 내 용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 6 6 호	(주)태복산업	김 성 수	전화 : 02-3461-2493~6	전화 : 02-3461-0226~9

5. 변경일자 : 97. 2
 6. 변경사유 : 전화변경(전화선 혼선 관계로 변경)

도로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 같은 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1997-70호
 차량운행제한

도로의 종류	국도	시 설 명	사천고가차도(서대문구 연희동 446~마포구 성산동 23)
제한의 대상	총중량 25톤 초과 차량	구 간	동 고가차도 구간
기 간	97. 3. 6 00 : 00부터 98. 12. 31 24 : 00까지		
이 유	동 고가차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노후로 인하여 내하력이 부족하므로 중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고가차도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전화번호 : 731-6766~8)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전화번호 : 3708-2402~4)		

<위치도>
 생략(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에 도면 비치)

●서울특별시공고제1997-71호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을위한청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

1. 청문내용

사 업 자 (사용본거지주소)	사업면허 번 호	차량번호	위반내용	청 문	
				일 시	장 소
유한준(서울 송파구 잠실동 44 주공A 438-510)	28789	서울2하 6409	별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공고일로부터 12일 이내	서울시 대중교통2과 사무실

이 상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형은
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전송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립니
다.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3.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1997-72호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 1. 상호(주)느리마인드
- 2. 대표자 : 강해명
- 3. 소재지 : 서울 송파구 가락동 2-5 재정빌
딩 3층

1. 변경사항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제 84 호	(주)느리마인드	강해명	소재지 : 송파구 가락동 2-5 재정빌딩 3층	소재지 : 송파구 가락동 2-5 재정빌딩 3층

- 5. 변경일자 : 97. 2
- 6. 변경사유 : 영업장 이전

구 고 시

●중구고시제1997-8호
서소문구역제1-2지구재개발사업관리
처분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85호(92. 8. 26)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411호(94. 12. 12)로 재개발사업시
행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1-2지구 재개
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및
도시재개발법부칙 제5조와 제6조의 규정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도시재
개발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응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국 도설재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1-2지
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및 면적
(가)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서
소문동 111 의 62필지
(나) 시행면적 : 3,603.5㎡
1) 대지면적 : 2,905.7㎡
2) 공공용지 : 697.8㎡
- (3) 시행자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 시행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리동 172-2
중앙산업(주) 대표이사 조승규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리동 172-2
- (4) 건축계획
(가) 대지면적 : 2,905.7㎡
(나) 건축면적 : 1,158.16㎡
(건축률 39.85%)
(다) 연면적 : 40,601.79㎡
(용적률 949.85%)
(라) 층수 : 지상 25층, 지하 6층



(라) 용도 : 업무시설, 이하로

부속용도 : 판매시설

(5) 사업시행기간 : 1992년 8월 26일 ~ 1997년 9월 26일

나. 분양실적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다.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라. 분양대상자별 분양계획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목과 면적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마.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별 권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목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바.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목과 이해 대한 양산방법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사. 복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안락역 도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목과 용도가 복제되는 공공시설의 명목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안. 도시복개발법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지 등의 명목과 추산액 및 처분방법 : 해당없음

자. 참여 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대지·건축시설의 명목 및 참여조합원의 주소·성명 : 해당없음.

차. 비용부담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계획 및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과 시기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카. 환저예장지 조성 : 중구 도시국 도심복개발 비치도서와 같습니다.

● 동대문구고시제 1997-1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26호(96. 4. 20)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43호(96. 6. 12)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103호(96. 12. 13)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43-112-1 장안동 283-1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명칭 : 장안교~중랑교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B=20m, L=1,50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사업비용 및 준공연월일

○ 당초 : 1996. 4. 20 ~ 1997. 12. 31

○ 변경 : 안가입 ~ 199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목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

영: 563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변경인가

영: 563

영	관	지	번	지	목	면적(m)	소		유		자	
							성	명	주	소		
			회경동 49-217		입야	105	신	석	순	김	홍	동 558-39
			회경동 49-217		입야	105						국

● 동대문구고시제 1997-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57호(부. 7. 20)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86호(96. 10. 15)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6-106호(96. 12. 25)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9 주변 외 3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대략여
-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토목과(920-4405~8) 및 건설관리과(920-44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두동 29, 152, 252, 253 주변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명칭: 용두동 29 주변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폭 6~8m, 연장(L) = 350m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사업허용 및 증공년월일: 사업인가일 ~97년 12월 31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1997. 3. 5

동대문구청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 실시계획 변경신고

(변경전)

연번	지번	용건	규모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성명	주소
1	용두동 253-48	주벽 화장실 대문 계단	슬레이트/블록 슬레이트/블록 철재	4.6 0.8 1식 1식	김강일	신설동 90-1

변경후

연번	지번	용건	규모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성명	주소
1	용두동 253-48	주벽 화장실 대문 계단	슬레이트/블록 슬레이트/블록 철재	4.6 0.8 1식 1식	이순자	신설동 90-1

●성북구고시제1997-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920-3385-8) 및 지적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입니다.

1997. 3. 5

성북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지적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중점	점비고
	등급	유별	폭원					
신설	중로	3	12m	보조간선도로	120m	강음동 510-33	강음동 508-49	

나. 관련도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

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7. 3. 5

강북구청장

●강북구고시제1997-1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

구립건설사업자 변경등록내역

등록번호	상	도	대표자	소	속	구	지정번호	비	고
95-9-3	(주)양덕투자개발		박 용 권	강북구	반동	등록일순	급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1항 제2호 및 7호 규정 적용업체		

●강북구고시제 1997-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강북구고시 제97-1호(97. 1. 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한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인가) 및 제26조(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종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구분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 모	시설결정고시	지적승인고시	비고
당초	강북구 수유동 460-3~미야동 837-734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화계사업구~성북구 계간 도로확장공사	폭원: 12m -20m 연장: 1,231m	서고 제356호 (94. 11. 5)	도봉구고시 제95-2호 (95. 2. 10)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폭원: 12m -20m 연장: 1,220m	변경없음	변경없음	사업구간 연장변경 L=11m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다. 사업기간: 1996. 5. 10~1999.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지)조사: 변경없음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강북구청 토목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과 (901-64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호(96. 11. 25)로 공람공고한 강북광역 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 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사회복지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 이 하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북구 반동 306-12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강북구고시제 1997-15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996-72호(96. 11. 21)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 정 및 지적승인되고, 강북구공고 제1996-

2) 명칭 : 강북강매인종합부지분 건설공사
 다.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362.87㎡
 라. 사업시정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

~199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사 : 평양
 사. 토지 또는 건물에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2조제5항의 관공인의 주소·성명 : 평양

토 지 조 서

연번	번	종류	면적 (㎡)	상	용	자	리	고
1	번동 306-25	대지	7	강북구	서초동	북강동	312-16	
2	번동 산 25-9	임야	56	강북구	노원구	라목동	우성동 107-303	지분 1/4
				강북구	종로구	혜화동	10-7	지분 1/6
				황금성	서초구	서초동	1464-7	금천빌라 B동 202 지분 1/6
				김영길	은평구	수색동	17-9	수정동 가동 402 지분 1/4
				라 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1556	중산마을 208-901 지분 1/4
3	번동 306-12	대지	281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수유3동 192-59	
4	번동 306-26	대지	21					
5	번동 306-27	대지	23					

●도봉구고시제1997-7호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67호(95. 3. 10)로 지구 지정된 양문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도봉구청 지역리합과 및 양문2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도 봉 구 청 장

가.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구명	위	치	면적 (㎡)	비	고
양문 1-1	도봉구	양문2동 713	3,469.2	공동주택건설방식	
양문 1-2			922.3	원지개발방식	

나. 사업시행기간 : 1997. 3~1999. 12

구분	면적(m ²)	시행방법	시행자
상단 1호	3,469.2	공동주택전입방식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상단 2호	922.3	현직계량방식	노원구청장

다. 부지환경개선계획의 내용: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건축물의 개량 계획 및 도시계획수행의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등(노원구청 지역개발과와 상동2동 사무소로 비치된 서류 및 도면과 같습니다.)

● 노원구고시제 1997-7호

도시계획시설(일국2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에따른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3호(97. 2. 4)로 도시계획시설(일국2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내도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노원구청 공원부지과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노 원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일국2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별첨 시설조서

나. 도시계획시설(일국2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계획 생략

※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노원구 공원부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철도2관민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가. 총괄표(위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 108 일대)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층수(층)	바닥면적(㎡)	연면적(㎡)		
계	260,500	22,864	4	484	1,191	24	
기반 시설	소계	7,532	-	-	-	-	-
	도로	6,429	-	-	-	-	-
	광장	1,103	1,103	-	-	-	-
조경시설	1,011	1,011	-	-	-	18	파고라
휴양시설	4,319	4,273	1	84	84	2	장외장 야외다기
유희시설	1,880	1,080	-	-	-	-	-
운동시설	6,462	6,462	-	-	-	-	-
교양시설	2,045	1,805	1	319	1,026	-	-
편익시설	36	36	1	16	16	4	-
관리시설	65	65	1	65	65	-	-
녹지 및 기타	237,636	-	-	-	-	-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60,500	22,864	4층	484	1,191	(24)	
기 반 시 설	계		전지역	7,532	7,532		-	-	-	
	도로		2개소	6,429	6,429					
	광	가	월계동 509-3	1,103	1,103					
	장	가-1	월계동 산 108-3	(979)	(979)					
		가-2		(124)	(124)					

38-14

구분	시 설 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분	규모	건축물(㎡) 바다면적/면적	공작물 (기)	비 고	
	계			1,011	1,011				(18)		
조경시설	화원	단	나	월계동 108-3	604	604					
			다	3개소	407	407					
		그늘시설	다	다-1	월계동 569-2	(238)	(238)				
				다-2	월계동 산 114-2	(92)	(92)				
				다-3	월계동 산 129-3	(77)	(77)				
				㉠	11개소	(346)	(346)				
				㉠-1	월계동 산 125-1	(48)	(48)				(3) 4×4
				㉠-2	월계동 산 108-3	(45)	(45)				(1) 3×15
				㉠-3	월계동 산 114-2	(16)	(16)				(1) 4×4
				㉠-4	월계동 산 114-3	(16)	(16)				(1) 4×4
				㉠-5	월계동 산 116	(32)	(32)				(2) 4×4
				㉠-6	월계동 산 120-1	(16)	(16)				(1) 4×4
㉠-7	월계동 산 130-1	(48)	(48)				(3) 4×4				
㉠-8	월계동 산 122-10	(48)	(48)				(3) 4×4				
㉠-9	월계동 산 122-9	(45)	(45)				(1) 3×15				
㉠-10	월계동 산 127-3	(16)	(16)				(1) 4×4				
㉠-11	월계동 산 108-2	(16)	(16)				(1) 4×4				
	계			4,313	4,273		1동	84	84	(2)	
휴양시설	휴게소	라	라	6개소	3,486	3,486					
			라-1	월계동 산 117-1	(380)	(380)					
			라-2	월계동 산 112	(940)	(940)					
			라-3	월계동 산 125-1	(292)	(292)					
			라-4	월계동 산 125-1	(872)	(872)					
			라-5	월계동 산 122-9	(391)	(391)					

0926

2020.5.

2

11

1997.3.5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비면적	시설면적		
유양시설	유계소 야유회장 경로당 장외자 야외탁자	라-8	철계동 산 122-10	(620)	(620)						
		마	철계동 산 108-4	580	580						
		1	철계동 산 131	238	198	조각	1동	84	84	(1)	50개소
			건지역							(1)	12개소
			철계동 산 112								
	계			1,680	1,680						
유회시설	어원이놀이터 놀이터 조합놀이대 시유허놀이판 놀이터 조합놀이대 시설 물	바	2개소	1,680	1,680						
		바-1	철계동 산 120-1	(700)	(700)						1개소
			"	"	"	"					2개소
			"	"	"	"					3개소
		바-2	철계동 산 127-3	(980)	(980)						1개소
			"	"	"	"					2개소
			"	"	"	"					1개소
	계			6,462	6,462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다목적운동장 체육단편장	사	4개소	1,710	1,710						11명
		사-1	철계동 570	(180)	(180)						(2명)
		사-2	철계동 산 112-2	(900)	(900)						(6명)
		사-3	철계동 산 114-3	(450)	(450)						(2명)
		사-4	철계동 산 125-1	(180)	(180)						(1명)
		아	철계동 산 130-1	2,400	2,400						
		자	4개소	2,352	2,352						
		자-1	철계동 570	(980)	(980)						
자-2	철계동 산 125-4	(1,028)	(1,028)								

구분	사설명	부호	위치	부기면적 (㎡)	가설면적 (㎡)	구조	층수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인접각 (기)	비고
운동 시설	체력단련장	자-3	월계동 산 125-1	(94)	(94)					
		자-4	월계동 산 131	(250)	(250)					
계				2,045	1,805		1층	319	1,026	
요양 시설	문화회관	2	월계동 산 128-1	2,045	1,805	철근콘크리트	1층	319	1,026	
							2층			
계				36	36		1층	16	16	(4)
편익 시설	취락수장	3	월계동 산 125-1 4개소	(3.4)	36	목재	1층	16	16	
							2층			
							3층			
							4층			
							5층			
계				65	65		1층	65	65	
관리 시설	관리사무소	4	월계동 산 108-2 전지역	65	65	목재	1층	65	65	
							2층			
계				237,638						4개소

다. 도로표지

구분	종류	유형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종	기상	종성	비고
합계					4,286	6,429				
신설	삼선표		1	1.5	225	337.5	삼선표	월계동 산 108-7	체력단련장(자-1)	
			2	1.5	100	150.0	연경표	체력단련장(자-1)	체력단련장(자-2)	
			3	1.5	250	375.0	·	월계동 산 108-1	체력단련장(자-2)	

구분	종류	유형	번호	폭신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	종	비고
신	산책로		4	1.5	220	330.0	산책로	산책로3 분기점	월계동 산 125-1	
		5	1.5	75	112.5	연결로	체력단련장(자 2)	유계소(라 3)		
		6	1.5	40	60.0	산책로	산책로4 분기점	산책로7 분기점		
		7	1.5	130	195.0	"	유계소(라 3)	월계동 산 125-1		
		8	1.5	160	240.0	"	체력단련장(자 2)	산책로27 분기점		
		9	1.5	320	480.0	"	체력단련장(자 1)	월계동 산 106-2		
		10	1.5	10	15.0	"	산책로9 분기점	광장(가 1)		
		11	1.5	9	13.5	"	산책로9 분기점	화단(나)		
		12	1.5	15	22.5	"	산책로9 분기점	광장(가 2)		
		13	1.5	225	337.5	"	산책로9 분기점	배드민턴장(자 2)		
		14	1.5	340	510.0	"	산책로13 분기점	월계동 산 108-3		
		15	1.5	25	37.5	"	산책로14 분기점	월계동 산 108-3		
		16	1.5	20	30.0	"	산책로14 분기점	화단(나)		
		17	1.5	160	240.0	연결로	배드민턴장(자 2)	산책로22 분기점		
		18	1.5	15	22.5	산책로	월계동 산 114-2	야유회장(마)		
		19	1.5	170	255.0	"	배드민턴장(자 3)	월계동 산 116		
		20	1.5	50	75.0	"	산책로19 분기점	월계동 산 116		
		21	1.5	55	82.5	"	산책로19 분기점	산책로22 분기점		
		22	1.5	60	90.0	"	월계동 산 120-1	산책로19 분기점		
		23	1.5	120	180.0	"	산책로22 분기점	산책로24 분기점		
		24	1.5	12	18.0	"	월계동 산 120-1	어린이놀이터(마-1)		
		25	1.5	315	472.5	"	월계동 산 122-15	산책로32 분기점		
		26	1.5	430	645.0	"	월계동 산 122-15	체력단련장(자 4)		
		27	1.5	210	315.0	"	월계동 산 122-15	어린이놀이터(마-2)		
		28	1.5	20	30.0	"	월계동 산 127-3	어린이놀이터(마-2)		

구분	종류	유형	번호	폭위 (m)	신장 (m)	면적 (㎡)	기능	기	상	종	점	비고
신 실			29	1.5	30	45.0	산책로	월계동 산 27-3		문화회관(2)		
			30	1.5	130	195.0	"	산책로25 분기점		산책로26 분기점		
			31	1.5	75	112.5	"	산책로29 분기점		휴게소(라-3)		
			32	1.5	70	105.0	"	휴게소(라-3)		산책로32 분기점		
			33	1.5	120	180.0	"	월계동 산 122-10		다목적운동장(아)		
			34	1.5	60	90.0	"	다목적운동장(아)		월계동 산 131		
			35	1.5	20	30.0	"	다목적운동장(아)		월계동 산 130-1		

* 2030 호

N

도

1997. 3. 5

38-19

●서대문구고시제 1997-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총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5

서대문구청장

1. 사업장: 관북동 방화동 5가 아파트
2. 사업주: 주택정주건설주식회사 (주) 방화동 5가 아파트
3. 사업시행위치: 서대문구 관북동 38-57, 57호 필지상
4. 대지면적: 7,381.95㎡
5. 건축면적: 654.43㎡
6. 건축 연면적: 11,170.16㎡
7. 건축률 및 용적률: 23.58%, 281.05%
8. 주택규모
 - (18A) 59.88㎡ 15세대
 - (18B) 59.88㎡ 30세대
 - (25A) 84.81㎡ 15세대
 - (25B) 84.86㎡ 15세대
 - (25C) 84.95㎡ 15세대
9. 지하층 면적: 3,370.24㎡
10. 지상층 면적: 7,799.92㎡

●강서구고시제 1997-8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76. 8. 1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방화동 567 주변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측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된다.

1997. 3. 5

강서구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강서구 방화동 567-36~567-40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 2) 사업의 명칭: 방화동 567 주변 도로건설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로면적 B=8m, L=20m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사: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조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토 지 조 서

공사명 : 방화동 567 주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폭길 (m)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방화동 567-40	대	8	8	홍신석 동작구 신대방동 600-49 (압류 화곡동 980-16 강서구청(세무관리과))	
2	방화동 567-36	대	169	169	나경식 강서구 화곡동 24-192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실제이용 상황	성명 주소
1	방화동 567-36	철재울타리 담장	H=2m L=17m 2×18m	1식 ·	울타리 담장	나경식 강서구 화곡동 24-192

●구로구고시제1997-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79. 10. 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74호(81. 10. 15)로 지적승인되었 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1997-5호 (97. 1. 1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전환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동 531-4~532-122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구로5동 531~534간 도로개설 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10m, L=40m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칭 : 따로붙임도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따 로붙임도서

따로붙임-1) 고지조서 1부

2) 물건조서 1부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구로5동 532-199	대지	31	31		김용택	영등포구 당산동5가 4 2 번 대3 2-103	532-126
2	532-124	대지	21	21		변승환	구로구 구로동 532-125	532-4
3	532-226	대지	34	34			(근저당권 구로구 구로동 519-5 구 로5동색마을금고)	532-125
4	442-145	대지	23	23		익성삼유(주)	중구 명동2가 52-3	442-93
5	442-282	대지	9	9		이커동	상복구 동소문동6가 216	442-62
						익성삼유(주)	중구 명동2가 52-3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60 구영회, 중구 최천 동2가 40 전경식, 종로구 내수동 70-64 황길태, 중구 사적동 330-1 신도번)	
6	442-144	대지	20	20		엄창열	구로구 구로동 442-63	442-63
7	442-284	대지	34	34		윤병조	구로구 구로동 442-93	442-93
8	442-283	대지	24	24		서상문	구로구 구로동 442-63	442-63
9	532-225	대지	3	3		김인규	구로구 구로동 532-122	532-168
10	532-224	대지	3	3		김삼태	구로구 구로동 532-156	532-156
11	532-223	대지	41	41		김성수	구로구 구로동 532-122	532-122
12	532-123	대지	22	22			(근저당권 구로구 구로동 519-5 구 로5동색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구로구 구로동 519-5 구로5동색마을금고)	532-4
13	442-281	대지	28	28		최영단	구로구 개봉동 407-11 번 동6 18-511 5차 401 (근저당권 영등포구 신길동 197-2 영등포농업협동조합(구로지사무 소))	442-46

분 권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면	물건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구로5동 442-93	건물	기와/적벽돌	30㎡	상가	운병조 구로구 구로동 442-93		
		서터문		4식				
		유리문		2식	출입문			
		영업권	LG전자	1식	상가			김전수 구로구 구로동 442-93
		영업권	공덕발상회	1식	상가			정재욱 구로구 구로동 442-93
2	442-63	건물	기와/벽돌	28㎡	상가	서상문 구로구 구로동 442-63		
		창개문		1식				
		다시		3식	출입문			
		서터문		2식				
		영업권	행운열쇠	1식				김우식 구로구 구로동 442-63
		영업권	구오동담	1식				박영길 구로구 구로동 442-63
		영업권	수피	1식				최정순 구로구 구로동 442-63
3	532-125	건물	편우개/벽돌	30㎡		변승찬 구로구 구로동 532-125 (근저당권 구로구 구로동 519-5 구로5동새마을금고)		
		세시문		3식				
		서터		3식				
		영업권	구로부동산	1식				박종열 구로구 구로동 532-125
		영업권	웅경이력장국	1식				김옥연 구로구 구로동 532-125
		영업권	순저방	1식				김옥순 구로구 구로동 532-125
4	532-122	건물	슬래브/적벽돌	46㎡	상가 및 주택	김성수 구로구 구로동 532-122 (근저당권 구로구 구로동 519-5 구로5동새마을금고)		
		세시문		1식				
		영업권	셋벌머리방	1식				임영희 구로구 구로동 532-122 (근저당권 구로구 구로동 519-5 구로5동새마을금고)

● 구로구고시제 1997-2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79. 10. 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81. 2. 16)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1997-4호(97. 1. 1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등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및 서울특

별시행정관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냅니다.

1997. 3. 5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동 552-110~552-107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구로5동 552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B=12m, L=50m
 라.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권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명세 : 따로붙임 조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의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 따로붙임 조서
 따로붙임 : 1) 토지조서 1부
 2) 물건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종	지적 (m)	면적 (m)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비 고
1	구로동 552-110	도	14	14		박태식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65 박태식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65 박삼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65 박분식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65 박우식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65 박완식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65	552-4
2	552-109	대	63	63		김봉배 구로구 구로동 552-12	552-12
3	552-116	대	18	18		김종근 구로구 구로동 523	552-29
4	552-108	대	49	49		김인수 구로구 구로동 552-15	552-16
5	552-117	대	20	20		문기식 구로구 구로동 552-10 문사송 구로구 구로동 552-10	552-10
6	551-184	대	5	5		오명식 구로구 구로동 551-51	551-51
7	552-107	대	55	55		김일봉 구로구 구로동 552-19	552-17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구로5동 552-12	건물 건물 건물 건물 담장 대문 경화조 보일러실 영업권	슬래브/벽돌 기와/벽돌 벽돌 철재 콘크리트	23㎡ 23㎡ 6.28㎡ 20㎡ 12㎡ 1식 1식 1식	1층 2층 지층	김봉배 구로구 구로동 552-12	



일련 번호	구로구 지구 구분	종류 구분	구로구 구분 구분	수량 (㎡)	실적이용 상황	소유 구분	구로동 구분 구분	구로동 구분 구분	구로동 구분 구분
2	552-29	건물 층상	기와/벽돌 석축	15㎡ 12㎡		김종식	구로구	구로동	523
3	552-16	건물 담장 대문 정화조 대문 사철나무 대나무	기와/벽돌 슬래브/벽돌 벽돌 철제 FRP 철제 사철나무	21㎡ 2㎡ 14㎡ 1식 1식 1식 1식		김인수	구로구	구로동	552-16
4	552-10	건물 창고 창고 담장 대문 장독대 대추나무	슬래브/벽돌 콘크리트 석시/석시 벽돌 철제 1식 대추나무	5㎡ 15㎡ 1㎡ 16㎡ 1식 1식 1식		문기성 문사홍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구로동	552-10 552-10
5	551-51	담장 대문 장미 대추나무	벽돌 철제	14㎡ 2식 1식 1식		오영식	구로구	구로동	551-51
6	552-17	건물 건물 담장 대문 정화조 대추나무	기와/벽돌 슬래브/벽돌 벽돌 철제, 석시 FRP	24㎡ 2㎡ 12㎡ 2식 1식 1식		김일봉	구로구	구로동	552-19

●구로구고시제 1997-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 10.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구로구고시 제27호(91. 7. 1)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1997-8호(97. 1. 1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등합시

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안전위원회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기록과,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96-12~15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고척2동 학의초등학교앞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계설 B=8m, L=48m

라.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마.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면·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칭: 도로부담 조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도로부담 조서
 도로부담: 1) 토지조서 1부
 2) 물건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고척동 196-13	담	53	53		조동철 구로구 고척동 196-2 (지상권, 근저당권 중구 남대문로2가 10-1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196-1	
2	196-17	대	23	23		정관수 구로구 고척동 196-5 (근저당권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주식회사 경기은행(반월차점))	196-5	
3	196-6	대	13	13		정관수 구로구 고척동 196-5	196-2	
4	196-18	대	24	24		안금래 구로구 고척동 196-7	196-7	
5	157-5	담	77	77		엄성화 구로구 고척동 256-26 엄안래 군포시 산본동 1052 주공㉑ 1105-403 이현식 군포시 산본동 1052 주공㉑ 1105-403 엄기명 군포시 산본동 1052 주공㉑ 1105-403 김현철 안양시 안양동 산 79-3	157-2	
6	157-7	대	23	23		김영훈 구로구 고척동 157-4 강창구 구로구 고척동 157-4 함양여자중학교 구로구 개봉동 136-2	157-4	

물 건 조 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면	물건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고척동 186-4	대문	철재	1식		조동삼 구로구 고척동	195-2
2	186-4, 196-13	창고 담장	합석/블록 블록 및 시멘트벽돌	4㎡ 11㎡		함태호 구로구 계동동	126-32
3	196-6, 196-18	창고 담장 부고상입문 복단	슬래브/시멘트벽돌 시멘트벽돌 블록	13㎡ 3㎡ 1식 1식		안금래 구로구 고척동	196-7
4	196-17	창고 화장실 담장 복단 부문 경화조	슬래브/시멘트벽돌 슬래브/시멘트벽돌 시멘트벽돌 콘크리트 철재 FRP	2㎡ 2㎡ 13㎡ 1식 1식 1식		정관수 구로구 고척동	196-5

●금천구고시제199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5

금 천 구 청 장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가. 상호: 유성연립 재건축조합(조합장: 강성호)
나.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 1028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 1028 외 5필지
나. 대지면적: 4,138.30㎡
다. 건축면적: 17,782.037㎡

라.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8~13층.

아파트2개동 130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7. 2~1999. 1
5. 본 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금천구청 주택과(890-2380~2) 또는 금천구 독산4동 1028 소재 유성연립 재건축조합(852-3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고시제1997-1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5

동 작 구 청 장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가. 설명: 상권연립 다세대주택 조합장 박충식
 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03-11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가. 사업위치: 동작구 사당동 209-3 외 7필지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규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사업비 (천원)	비고
	층	동	세대수					
공동주택 (아파트)	10~18	3	340	사업부지 12,013.2 (대지면적 11,709.7 -도로면적: 303.5)	3,286.19	45,556.88	35,399,713	

4. 사업시행기간: 1997. 6~1997. 2

7. 사업승인 도면: 별첨

5. 관공법등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나.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검용의 허가

다. 행정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협의허가

라.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마.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허가

6. 변경승인 내역: 복리시설 호수별 구획변경 및 용도변경(지층 생활권익시설 일부 299.71㎡→중고생활시설로)

●동작구고시제1997-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5

동 작 구 장 관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가. 성명: 대우건설(주) 대표이사 주준경

나.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사동 586-1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가. 사업위치: 동작구 대방동 82-6 외 1필지

나. 사업 면적 및 규모

주택종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사업비 (천원)	규 모			비고
					동수	층수	세대수	
공동주택 (아파트)	변경전: 5,378.00 변경후: 5,328.00	변경전: 1,224.64 변경후: 1,219.93	26,306,346	변경전: 26,959,093 변경후: 26,858,376	2	19~23	206	



- 4. 사업시행기간 : 1996. 6 - 1999. 3
- 5. 관공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가. 도시계획법 제1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나.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다.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협의의 허가
 - 라. 건축법 제33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자실건축물의 신고

- 마. 수도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상수도 설치의 허가
- 6. 사업승인 도면 : 생략

●관악구고시제 1997-16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우리 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 자진반납 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추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7. 3. 5

관악구청장

등록말소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입 수 계 지	처분내용	사 유
95-21-09	(주)화성주택	이종철	관악구 봉천동 1568-1	등록말소 (1997. 2. 25)	자진반납

●서초구고시제 1997-12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적승인

1.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시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서초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형	시설의 세분	폭면 (m)	연장 (m)	사 경	종 경	비 고
결정	소로	2	일반도로	8	295	방배동 596	방배동 581	최고계획기속사 결정도로
기정	소로	3	일반도로	5	80	양재동 189-4	양재동 156-3	노선연장
변경	.	3	.	6	100	.	.	(L=20m)



다.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 및 적법승인 공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지장	수도	방곡동 산 96 일대	31,200	감) 311m	
면적			30,889	방곡 제2배수지	

다. 권역도면: 방곡동 산 96 일대

의하여 다음 지역을 부가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송파구고시제1997-9호**

1997. 3. 5

민영주택건설부기과열지구지정

송파구청장

주요내용: 방곡동 산 96 일대

연령	지정구역	대지면적 (m ²)	다세대주택	전입규모	분양면적(㎡)	사업주명
1	지역동 136-4	4,142.85	지역동 삼아파트 1동 10층 76세대	호아파트 19층 112세대 31세대	지역동 136-4	주요내용: 방곡동 산 96 일대

●**송파구고시제1997-1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 3. 5

송파구청장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 최재호 외 1인
서울주택개발(주) 대표이사 김동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송파구 석촌동 273, 273-12
나. 대지면적: 1,191.08㎡
다. 건축연면적: 6,200.92㎡
라. 규모: 지하 2, 지상 8층, 1동 연립주택(5~8층, 24세대)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7. 2~1999. 12



●**성동구공고제1997-52호**

행정처분을위한청문통지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96.영업실적과 97.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미제출 업체 중 주소불명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청문에 출석하시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시면 청문 전일까지 성동구청 주택과로 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1997. 3. 5

성동구청장

가. 청문대상: 성동구 성수동2가 289-306



온호트(주) 대표자 권진석
 나. 방문일시: 1997. 3. 10(월) 10:00
 다. 방문장소: 성동구청 주택과
 라. 방문주최자: 주택과 주택계장

핵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용 양도 인가하
 였기때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지 이를 공고합니다.

1997. 3. 5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공고제 1997-4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지 아

- 1. 양도인가일: 1997년 2월 24일
- 2. 업종 및 면허번호: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임. 제54-서울-07-16호

구분	종	양	도	자	양	수	자
구분	도		영	신	업		정
구분	자		안	국	도		안
구분	구분		동대문구	회경동	258		동대문구
구분	구분		회경동	258		동대문구	회경동
구분	구분		비계(96-1.	179.330.000	원)		비계(96-1.
구분	구분		179.330.000	원)			179.330.000

●성북구공고제 1997-52호

성북구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역)

내의건축등행위허가제한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
 역)내 대학여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지 건축 등 행위허
 가를 제한하고 건축법 제12조제3항에 의지
 이를 공고합니다.

욱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 3. 제한대상: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가. 구정장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건축
 허가(용도변경 포함)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제
 획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

- 4. 제한구역: 도면상략
 -성북구 관내(3개소 506,000㎡)

1997. 3. 5

성북구청장

- 1. 제한목적: 도시계획결정지(상세계획구
 역) 내의 원활한 상세계획을 추진코자 선
 속허가를 제한
- 2. 제한기간: 97. 2. 26~98. 2. 28.
 (단, 건축허가제한 기간 전이라도 상세제

구	별	명	위	차	면	적(m ²)	비	고
계					506,000			
석	관	동	지	구	중	심	133,000	
석관동 242-1 일대								
월	곡	동	지	구	중	심	58,000	
월곡동 46-1 일대								
길	음	(미	아)	지	구	중	심	
하월곡동 88 일대								

5. 기타 세부사항(관련도면 및 건축허가 제 한범위)은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

의 것으로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하심과 동시에
경량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의 의거 의결 하므로합니다.

●양천구공고제 1997-31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1997. 3. 5

양 천 구 장 관

가. 양도인가 내역

양 도 인 가 일	1997년 2월 21일	
양도인가번호	설비공사업(95-서울-12-50)	
양도인	(주)경영공조	양수인
주주	한영호	(주)금강이앤지
사무소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408-334	경기도 안산시 고원동 500-3
등록금액	364,320,000원(96년)	364,320,000원(96년)

●양천구공고제 1997-33호

도로공사계획

다음과 같이 우리 구에서 97년도에 시행
할 도로계획 및 확장, 도로정비공사 계획
을 확정하였기 도로법시행령 제24의3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3. 5

양 천 구 장 관

가. 공고내역

도로의 종류 및 노선	공 사 명	공사시행구간	사업규모	공사시행기간	
				착공일	준공예정일
중 로	목1동 405-11~404-18간 도로확장	목1동 404~목1동 409	도로확장 B=8~15m L=210m	97. 9. 3	97. 12. 30
소 로	목2동 124~134간 도로개설	목2동 129~135	도로개설 B=6m L=160m	97. 3. 20	97. 6. 30
소 로	목1동 404 일대 도로개설	목1동 404-156~404-19간	도로개설 B=6m L=65m	97. 3. 20	97. 4. 30
소 로	강서자동차학원앞 도로개설 및 정비	신월3동 197~198-52간	도로개설 B=6m L=70m 도로정비 B=6m L=70m	97. 9. 3	97. 11. 30

도로의 종류		공사시행구간		공사시행기간	
구분	공사명	구간	구간	시행일	종료예정일
소	신월3동 174 주변	신월동 184, 189	도로정비	97. 3. 15	97. 6. 30
	외 6개소 도로정비	190, 193, 175, 174	B=4m		
		195 주변	L=950m		
소	목4동 784 외 2개소	목4동 784, 789	도로정비	97. 3. 15	97. 6. 30
	도로정비	797, 798 주변	B=4~6m		
			L=500m		
소	신월2동 296-18~294-12간	신정2동 294~144	도로정비	97. 3. 15	97. 6. 30
		간	B=6m		
			L=270m		

다. 사업장: 양정구청장

●강서구공고제1997-18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에따른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38호(95. 11. 30)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고시되고 제1996-14호(96. 4. 10)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05-5 일대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제 의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본 사업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3. 5

강 서 구 청 장

가. 공람공고 장소: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사업시행지: 강서구 외발산동 205-5 일대

라.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

(변경전: 시장, 변경후: 유통업무설비)

마.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사업시행기간: 93. 10. 15~99. 12

(변경전: 93. 10. 15~96. 12, 변경후: 93. 10. 15~99. 12)

사. 토지소유자 및 면적(지적면적 누락분 추가)

- 강서구 외발산동 296-1, 지목(대지), 지적면적(38㎡), 소유자(국유지)

아. 시설(유통업무설비)의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38,647㎡)

●금천구공고제1997-30호

도시계획(인)공람

1.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임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에는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금천구청 도시정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7. 3. 5
 금 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정비과(890-2385~7)
 다.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공람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경유지	비 고
기정	도로	중로	1	20~34	1,500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 안양천시계		일부구간 확폭 (B=20 → 29m,
변경	"	"	"	"	"	독산동 1023-24	대로 2-52	시흥대로	L=494m)
결정	"	대로	3	25	242	시흥동도시계획구역계	시흥대로 (광로 2-15)	안양천	신설

●서초구공고제1997-53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자진반납)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말소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7. 3. 5
 서 초 구 청 장

가. 자진반납업체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자본금	비고
1	94-22-54	국현건설(주)	노해룡 임대택	반포동 746-5 서일B/D 504호	3억원	

●강남구공고제1997-49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7. 3. 5
 강 남 구 청 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1997. 2. 25	건축물조립 95-서울-20-14 강구조물 95-서울-21-14	(주)건화건축 사 사무소	강남구 성동 108-9	삼 김기상	(주)아리종합 건축	강남구 성동 108-9	삼 김기상

● 승파구공고제 1997-4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7. 3. 5

승 파 구 청 장

1. 양도인가 연월일: 1997년 2월 24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양파구사업(면허번호: 94-서울-01-256)
3.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가. 양도자
 - 상호: (주)금수산건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승파동 85
 - 대표자: 김남수
 - 나. 양수자
 - 상호: (주)토성엔지니어링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93-12
 - 대표자: 한정운

● 승파구공고제 1997-41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면허를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7. 3. 5

승 파 구 청 장

1. 양도인가 연월일: 1997년 2월 24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의정공사업(면허번호: 94-서울-01-212)
3. 양도자, 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 상호 및 성명
 - 가. 양도자
 - 상호: 한일건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신현동 11-9 한신오거리빌 803호
 - 나. 양수자
 - 상호: (주)한길건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승파구 신현동 11-9 한신오거리빌 803호
 - 대표자: 김중철

사업소고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7-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7. 3. 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 가 연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승인을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7. 2. 21	서울특별시 승파구 중남동 386-1선	하천	70	한강변 차집전력공사용 광고	97. 2. 22~ 97. 12. 31	서울특별시 동구 24	강삼환(주)이사동(주)최용근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7-16호

하천점용승인
하천법 제6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의 규정적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7. 3. 5

한강관리사업소장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승인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7. 2. 24	영등포구 여의도 동 86-5(천호대 교면)	하천	220	환경미화원 휴제실 및 강변보관소	97. 2. ~ 97. 12. 31	서울시 영등포 구 당산동3가 구청장 385 1
	영등포구 당산동 25(보태유교앞)		10			

사업소공고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공고**
제 1997-16호

입찰
경기도 파주시 탄현동 159-1 서울대공원

의 편입(간매) 시설을 도시공전법 제6조제
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전조례 제3조, 동 조
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
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행을 공
고합니다.

1997. 3. 5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리관

1. 입찰(위탁관리) 대상 및 참가자격

사 실 명	입 찰 단 위	총시설현황		참 가 자 격	비 고
		식음료	휴거		

- (공 통)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법인(주원 영업장 소재 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갖춘 자로 민법상 행위무능 력자가 아닌 자

식음료, 휴거 9-1	48㎡	2,66㎡	(동물원 안)	별 도 의
자판기	식음료(36대) 1호, 6~15호 휴거(14대) 1~8, 14~19호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법인 * 개인-주민등록동본 1동 * 법인-법인동거본동본 및 정관 1동	여가공간 없음

2. 위탁관리기간: 계약일(잔금 납부일)~ 1997. 12. 31

- * 수탁자의 사중허가는 특별한 사유(지시 불이행 불량업소 등)가 없는 한 1년간 기간연장할 수 있음.
- * 2년간 위탁료 산정방법
 - 97년 위탁료는 97년 낙찰가
 - 98년 계약은 97년 위탁료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98년 감정 후 산정한 위탁료가 98년 위탁료 계약금이 되면 증액분은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위탁료 산정은 도시공원조례 및 당 관리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 3. 입찰등록 : 공고일로부터 11일간(97. 2. 28~97. 3. 10. 18:00까지)입니다.
- 4. 현장설명 : 입찰유의서 배부(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과에서 배부)
 - 일시 : 97. 3. 7. 10:00
 - 장소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강당
 - * 입찰유의서 및 공고내용 일부 변경에 따른 현장설명에 결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찰일시 : 97. 3. 11. 10:00
- 6.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대강당
- 7.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낙찰자)
- 8. 입찰보증금 및 식공고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입찰액 대한 5% 이상 금액)에 의합니다.
 - * 계약보증금 미납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시에 귀속된다.
- 9. 입찰무효 : 국가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 10. 계약보증금 납부 : 국가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규정(낙찰가의 10% 이상 금액)에 의합니다.
-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국가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합니다.
 - * 수탁관리계약 후 기한(10일)내 위탁료 전액을 납부치 않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기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당시에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은 재입찰에 부합니다.
- 12. 입찰요령 : 입찰서에 금액기재 날인(상시인할 및 우편입찰 가능함) 후 제출
 - * 입찰유의서 및 관련자료와 입찰공고내용의 기재사항 미숙기로 받는 불이익처분은 본인 귀책사유로 당 관리사업소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13. 입찰전 유의사항
 - 낙찰자는 수탁관리받은 권익시설을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위탁관리기간 중에 당 사업소의 사정에 의해 위치 및 위탁관리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운영상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에 있어 당 사업소의 지시를 받습니다.
 - 권익시설의 기본시설(지하전기배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시설비(자관거보호막, 자관기, 휴지자관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당 관리사업소에 주장할 수 없다.
- 14. 특기사항
 - 시설물 인수인계 : 당사자 현직
 - * 권익시설 중 사적재산의 인수인계는 당사자 합의에 의합니다.
- 15.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당 사업소 비치)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및 인감증명서 1부

□ 참가자격에 기재된 각 서류 1부

* 신분증 인장 지참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운영과 (500-71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기능직 공무원 복직

발령 제94호(1997. 2. 24)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사무원(행보) 10등급 신은주 복직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7급 토목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95호(1997. 2. 22)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주사보 이순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8급 통신직 공무원 전보

발령 제96호(1997. 2. 26)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통신서기 진춘환 민방공경보통제소

서울특별시장

8급 간호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97호(1997. 3. 1)

아동병원 지방간호서기 김병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지도직(농촌지도관) 공무원 전출·입

발령 제98호(1997. 2. 25)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장 지방농촌지도관 김익 농촌진흥청 전출을 명함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농촌지도관 나우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촌지도관에 임함, 농촌지도 소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장

기 타

정정

시보 제2027호(1997. 2. 2일자)의 강동구 공고 제1997-21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내용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1997. 3. 5

강동구청장

오	장	비 고
1. 서고 제92호(79. 2. 28) 및 서고 1993-352호(93. 11. 5)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사 제1993-40호(93. 11. 29)로 지적승인된 천호대교~광진교간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	1. 강동구고사 제1994-47호(94. 9. 28)로 시설결정되고, 강동구고사 제1994-56호(94. 10. 27)로 지적승인된 하일동 324~297간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	88-79쪽 하단에서 88-80쪽 상단 15째줄까지

오	강	비 고
<p>계획 결정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일 니다.</p>	<p>2.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 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p>	1997. 2. 20
1997. 2. 20	강 동 구 청 장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화일동 324-297	
가. 사업시행지: 천호동 473-40~ 천호동 452-84	간	
나. 사업명: 천호대로~장진로 도 로개설 공사	나. 사업명: 화일동 324-297간 도 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15m, 길장 46m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6m, 연 장 170m	
라.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라.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실시 계획 인가일~1998. 12. 31	마.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실시 계획 인가일~1998. 12. 31	
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사. 공람장소: 강동구청 건설관리 과 및 도로과(480-1400~8)	사. 공람장소: 강동구청 건설관리 과 및 도로과(480-1400~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별첨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별첨	
자.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자.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